

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 안 번 호	60
--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6. 11. 3.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(구) 충남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보육시설을 설치중에 있는바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로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추가하고
- 나. 「영유아보육법」의 전문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, 제3조 및 제6조).
- 나. 신설되는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정함(안 별표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2006년도 예산반영(24,544천 원)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
 - (1) 신구 조문 대비표 : 별첨
 - (2) 규제심사 : 규제신설 · 폐지 없음
 - (3) 입법예고 : 2006. 9. 22 ~ 10. 12 / 접수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영유아보육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” 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”로 한다.

제3조중 “법 제17조”를 “법 제28조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제4항,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중 “수탁법인”을 각각 “수탁기관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수탁법인의 의무)”를 “(수탁기관의 의무)”로 한다.

제6조 각 호외의 부분중 “법 제22조,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제4호”를 “법 제36조,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24조”로 한다.

별표 2란 다음에 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분	명 칭	위 치	비 고
3	대전광역시으능정이어린이집	중구 은행동 142- 6	

제명 “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”를 “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”로 한다.

제5조제4항중 “국민건강보험법”을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으로, “근로기준법”을 “「근로기준법」”으로, “국민연금법”을 “「국민연금법」”으로 한다.

제6조 각 호외의 부분중 “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”를 “「대전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」”로 한다.

제7조중 “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”를 “「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영유아보육법</u>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----- 「 <u>영유아보육법</u> 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-----
제3조(입소대상)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3세미만의 영아를 원칙으로 하며, 입소 우선순위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. 다만 입소신청 인원이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3세이상 유아도 입소할 수 있다.	제3조(입소대상) ----- ----- ----- 법 제28조 --
제4조(운영관리)①어린이집은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운영관리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. ②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, 시장은 대전광역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위탁운영할 법인(이하 “수탁법인”이라 한다)을 선정하여야 한다. ③(생략)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법인의 의무, 위탁해지, 위탁내용,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.	제4조(운영관리)① ----- ----- -----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. <삭 제>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수탁기관 -----
제5조(수탁법인의 의무) ①수탁법인은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	제5조(수탁기관의 의무) ①수탁기관--

련된 수입금을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수탁법인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수탁법인은 재산의 손실보전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당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수탁법인은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,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6조(비용의 보조) 시장은 법 제22조,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제4호 및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1. ~ 2. (생략)

[별표]

<신 설>

② 수탁기관

③ 수탁기관

④ 수탁기관

제6조(비용의 보조) ----- 법 제36조,

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24조--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[별표]

구분	명 칭	위 치	비고
3	대전광역시 으능정이어린이집	중구 은행동 142-6	

영유아보육법

제10조(보육시설의 종류)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국·공립보육시설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보육시설
2. 법인보육시설 :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이 설치·운영하는 보육시설
3. 직장보육시설 :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보육시설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)
4. 가정보육시설 :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·운영하는 보육시설
5. 부모협동보육시설 :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·운영하는 보육시설
6. 민간보육시설 :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

제12조(국·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·공립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·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(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) ①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·공립보육시설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.

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28조(보육의 우선 제공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<신설 2005.12.29>

2. 「모·부자복지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<신설 2005.12.29>
 3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<신설 2005.12.29>
 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
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<신설 2005.12.29>
 5.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<신설 2005.12.29>
- ②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6조(비용의 보조 등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
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, 보육교사의 인건비,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
는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,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, 취약보육의 실시등
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

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제24조 (비용의 보조)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
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

1. 보육시설의 설치, 증·개축 및 개·보수비
 2. 보육교사 인건비
 3. 교재·교구비
 4. 보육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비
 5.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
 6.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
 7.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
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- ②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당해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 <개정 2005.6.23>